

의안번호	2213398
의 퇴 인	이해식의원
회 답 일	2025.11.7.
추계번호	25D540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現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상설운영하고, 부위원장 1명 및 위촉직 위원 9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700만원 등 향후 5년간 215억 7,900만원(연평균 43억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평균
위원회 상설 운영 (안 제62조)	-	2,940	5,998	6,118	6,240	21,296	4,259
부위원장 1명 및 위 촉직 위원 9명 추가 (안 제64조)	57	57	57	57	57	283	57
합 계	57	2,997	6,055	6,175	6,297	21,579	4,316

주: 본 추계 결과는 現 지방시대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규모를 준용하여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2 (포상)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1조의3 (균형성장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이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31조 (특별협약의 체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 이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	의무규정
4	안 제31조의2 (범부처 초광역 추진협의체)	초광역협력사업 및 추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31조의3 (권역별 초광역 공동사업단)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62조(자치 분권균형성장위 원회의 설치)	現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변경하 고,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現 존속기한: 2023.7.10.~2028.7.9.(5년간)	의무규정
7	안 제64조(자치 분권균형성장위 원회의 구성·운 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위원 수를 51명 이내로 확대(기존 39명 이내)하고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장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체 대표자를 추가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1조의2 (포상)	×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포상·포상금 지급 등의 기 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현 시점에서 예측 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2	안 제11조의3 (균형성장영향평가)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정책이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 발 생이 예상되나 평가 대상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3	안 제31조 (특별협약의 체결 등)	×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 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광역특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협약이 체결되는 경 우 이에 따른 사업비, 지원금·보조금 등, 사업단 운영비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협약 체결 여부, 사업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4	안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5	안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6	안 제62조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 회의 설치)	○	
7	안 제64조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 회의 구성·운영)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現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법 제정에 따라 2023년 7월 10일 출범하였고, 법 제62조에서 5년간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존속기한은 2028년 7월 9일까지임
- 개정안은 위원회가 5년간 존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존속 기한 없이 상설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영비용이 발생하는데 본 추계에서는 現 위원회의 예산규모, 정원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現 운영비용을 준용함
 - 지방시대위원회 운영비용은 분과위원회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에 분리하여 편성되어 있는데 2024년 55억 8,200만원, 2025년 55억원이 편성

[표 2] 現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24년	2025년
산업통상부	지방시대위원회인건비	672	371
	지방시대위원회지원	3,274	3,293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운영	1,636	1,836
계		5,582	5,500

주: 1.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편성
 2. 인건비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민간근로자 등 위원회의 존속기한과 채용여부가 연계되는 직원의 인건비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안전부 예산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와 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은 운영비에 반영되어 있음
- 위원회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조직 직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의 과제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원조직 중 공무원의 인건비는 위원회 상설 운영과 연계되지 않음
 - 존속기한과 채용여부가 연계되는 전문임기제, 민간근로자 등의 인건비는 운영비에 반영
- 안 제6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9명 이내’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1명 이내’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위원장 직책수행경비와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

[표 3] 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현행	개정안
위원장	1명	1명
부위원장	1명	2명
총 위원	40명 이내	51명 이내
당연직	19명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대표, 시·도의회 의장 대표, 시장·군수·구청장 대표, 시·군·구의회 의장 대표)	21명 (법무부장관, 시·도교육감 대표 추가)
위촉직	21명	30명

주: 위촉직 위원 수는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총 위원수에서 당연직 위원수를 제외한 최대인원 수로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4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위원회 본회의는 총 9회, 분과회의는 총 17회 실시하였는데 추계기간동안 동일한 횟수로 회의가 개최된다고 가정하고,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위촉직 위원 9명의 회의참석수당을 추계
 - 회의참석수당은 1인당 25만원으로 추계기간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를 적용함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5년 7월 기준, 단위: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CPI)	1.9	2.0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회 상설 운영

- 위원회 존속기한 폐지에 따라 위원회가 상설 운영되므로 당초 위원회 존속 기한 이후의 운영비를 추계함
 - 당초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7월까지이므로 2028년은 6개월동안의 운영비를, 2029년부터는 연간 운영비를 추계
 - 2024년과 2025년 위원회 평균 운영비용은 55억 4,100만원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추계 결과, 위원회 상설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9억 4,000만원 등 향후 5년간 212억 9,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위원회 상설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위원회 상설 운영 (안 제62조)	-	2,940	5,998	6,118	6,240	21,29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부위원장 1명 및 위촉직 위원 9명 추가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부위원장의 직책수행경비는 연간 1,6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위원장 1명 추가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직책수행경비가 추계기간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2024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는 9회 개최되었고, 분과회의²⁾는 총 17회 실시하였는데 증원되는 9명의 위촉직 위원이 본회의 및 분과회의에 각각 참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
 - 개정안은 분과위원회를 자치분권분과위원회, 균형성장분과위원회 2개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9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2) 현행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략기획, 혁신성장, 지방분권, 생활기반의 4개 분과로 구성하였음. 다만, 개정안은 자치분권분과위원회와 균형성장분과위원회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문화함

- 추계 결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촉직 위원 9명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 5,700만원 등 향후 5년간 2억 8,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부위원장 1명 및 위촉직 위원 9명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부위원장 직책수행경비(a)		16	16	16	16	16	80
회의 참석 수당	참석회의 수(b) (본회의 및 분과 회의)	18	18	18	18	18	—
	위원 수(c)	9	9	9	9	9	—
	참석수당(d)	0.25	0.25	0.25	0.25	0.25	—
	소계 (e=b×c×d)	41	41	41	41	41	203
계(a+e)		57	57	57	57	57	283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부위원장 1명 및 위촉직 위원 9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215억 7,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위원회 상설 운영 (안 제62조)	—	2,940	5,998	6,118	6,240	21,296
부위원장 1명 및 위촉직 위원 9명 추가(안 제64조)	57	57	57	57	57	283
합 계	57	2,997	6,055	6,175	6,297	21,57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現 지방시대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규모를 준용하여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